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복지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2017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4월 3일,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7년 4월 6일 원안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2017.4.1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가.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관련 규정 개선권고 등 도시행정 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하여 도시경관 및 환경의 개선·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도시디자인의 범위와 영역 재정립 및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벽화, 공공조형물 분야에 대한 규정 확충으로 도시의 효율적·체계적 보전·관리 근거 마련
- 2)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 자문 대상 및 기준 명시
- 3)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 자문 신청 시기 및 절차 명시

다.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 나) 「지자체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사항
- 다)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라)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 마)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2) 예산사항: 별도조치 없음

3) 사전심의

- 가) ‘종로구 기본 조례’ 적합 여부: 적합
- 나) 규제심사 결과: 의견없음
- 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 (불임)

4) 입법예고 : 2016.10. 7. ~ 10. 27.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개정 배경

- 2014년 9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의안번호 제2014-305호)을 반영하여, 우리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 등을 대상으로한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부분을 제6장(章)에 신설함.

또한 상위조례 개정사항(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등)을 반영하여 우리구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3장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제4장 유니버설디자인, 제5장 벽화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였음.

○ 종합의견

- ① <종로구 공공조형물 전수현황 및 기부채납 여부>에 대한 건설복지위원회 의원 자료요구에 대해 답변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추계서(또는 예외사항에 해

당되면 미첨부 사유서라도 제출해야 함)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예상되는 비용부담을 확인할 수 없음. ③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에서 제시한 조례표준안 제4조제1항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한 의무규정을 우리 구는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과, ④ 조례표준안에는 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빠져있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부지면적 기준’과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⑤ 특히 부칙 안 제2조에서는 기(既) 설치된 조형물에 대한 경과규정을 둬으로써,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선 <관내 공공조형물 현황과 기부채납 여부>에 관한 참고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나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함.

관 계 법 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4.] [법률 제13956호, 2016.2.3., 제정]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

☐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윤종복 위원외 심사보류안

6. 토론의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심사보류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함)